1-11	실증자료 생산시기 및 미실증 책임 규제 규정 도입	공정거래위원장	이행추진

□ 권고 내용

○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들이 허위·기만 광고를 하지 않도록, 실증자료의 생산 시기를 규정해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, **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표시·광고에 대해 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로 간주**하는 등 **미실증 책임에 대한 규제 규정을 도입**하기 바람.

□ 이행 현황

○ **(연구용역)**「표시광고법 실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」('23. 5 ~ 10)

○ **(전문가 자문)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** 개최('23.11.30)하여 사업자 책임 강화방안 및 실증제도에 대한 사업자 인식 제고 방안 등 자문

○ **(실태조사)** 친환경제품 판매 사업자(250여 개) 대상으로 **실태** 및 **제도개선**에 대한 **의견수렴** 후 이해를 돕기 위한 **안내서** 제작·배포('24. 3~5)

○ **(법 개정)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개정안* 발의('24.12.5)**

*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한 표시·광고행위 시 표시·광고 전에 실증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,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요청한 실증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로 추정

○ **(고시 개정) 「기만적인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개정·시행*('25.10.30),「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」고시 개정** 추진**

*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정보를 은폐·누락 행위를 유형으로 추가, **가습기살균제 제품**에 **독성물질**이 함유된 사실을 은폐여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를 예시로 적시

실증자료 제출기한 **연장사유 명확화 및 **연장기간** 사유 소멸된 날부터 30일 → **15일**로 **단축, 실증자료 미체출 시 원칙적 임시중지명령**

□ 향후 계획

○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